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 변경, 선불충전금보호 등 관련 사업자 대비 필요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 5. 24. 실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①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②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③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④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자들은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적 자문을 통해 위 예고기간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업구조를 검토하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일 입법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②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③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④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의 구체화,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등 사업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종전	개정안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총발행잔액 30억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발행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발행인에 포함하여 제3자로 보지 않음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잔액 500억원 미만의 경우 등록 면제, 특수관계인의 범위 삭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 확대
소액후불결제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 운영	선불업자의 경영업무로 법제화, 금융위원회의 승인 필요(재무건전성 요건 충족해야)
전자지급결제 대행 관련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와 가맹 계약 체결 가능	등록PG사와만 가맹 계약 체결 가능, 정보 제공의무 신설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 등록 면제금액을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잔액 500억원 미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되었던 상법상 모회사 및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환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을 축소하는 경우 이용자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하였고, 선불업자 파산 등 유사시에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업자 중 부채비율 20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만 할인발행, 적립금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선불을 예금·타 사업자가 발행한 선불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나. 소액후불결제(BNPL) 법제화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선불업자의 경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대안 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가맹점의 자격 및 정보제공의무 명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포섭하여,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거래대행 과정에서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맹점에게 부여하여, 하위 PG사→ 상위PG사→ (직·선불)결제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한 가맹점 상호·사업자번호, 거래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3. 시사점

시행령 개정안은 5.24일(금)부터 7.3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 간 포인트 사업 등이 선불전자금융업으로 규율되는 등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들은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적 자문을 통해 위 예고기간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업구조를 검토하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에서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고문(디지털금융센터장)을 비롯하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변호사, 고문 및 전문위원들과 금융회사 출신 변호사 등 최적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최용호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396

E. yhchoi@hwawoo.com

주민석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21

E. msjoo@hwawoo.com

이상빈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558

E. leesb@hwawoo.com

김용태

고문

T. (+82) 2 6003 7043

E. kimyt@yoonyang.com

최준익

전문위원

T. (+82) 2 6182 8332

E. jic@hwawoo.com

최정영

전문위원

T. (+82) 2 6003 7538

E. cjy@yoonyang.com